

수입기기검사 관련 고시 및 지침 시행에 따른 검사업무 절차 안내

□ 목 적

- 「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(고시 제2021-198호, 개정2021.11.23.)」 및 「고시 시행 전 현장용접검사 완료기기 처리지침(2020.4.23.)」 시행에 따른 검사업무 절차 안내

□ 처리 절차

① 고시에 따라 외국의 검사기관에게 검사받는 경우

절 차	주 체	방 법
검사대상, 검사기관 여부 확인 (권장사항)	신 청 인 ¹⁾ → 공단 본사	메일 (yeji92@energy.or.kr)
↓		
검사 의뢰	신 청 인 → 검사기관 ²⁾	검사 신청 또는 계약 등
↓		
제조 및 검사 ³⁾	제조업자 및 검사기관	고시 [별표1]에 따른 인정기준
↓		
검사증 ⁴⁾ 발행	검사기관 → 제조업자	고시 [별표1]에 따른 인정기준
↓		
검사면제 신청	신 청 인 → 공단 본사	고시 [별지 제1호 서식]
↓		
검사 면제확인서 발행	공단 본사 → 신 청 인	고시 [별지 제2호 서식]
↓		
수입 및 설치	신 청 인	수입신고필, 설치검사 장소
↓		
설치검사 신청	설 치 자 → 공단 지역본부	에법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 서식]

1) 수입대행업자, 설치자, 제조업자 등 수입하려는자

2) 고시 제3조에 따른 외국의 검사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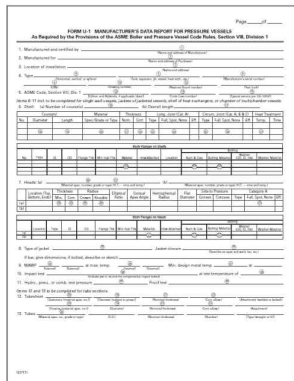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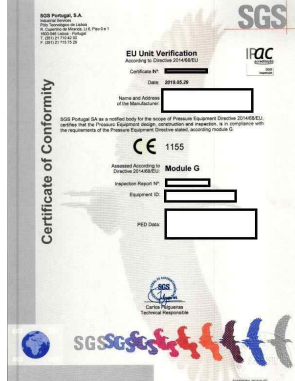


3) 개별기기에 대한 설계 및 제조검사

4) MDR(ASME), COC(PED), 법정검사증(일본, 중국 기준)

※ 유의사항

- 현장용접검사 완료 기기의 경우에도 **외국의 검사기관에게 신규로 설계단계부터 제조검사를 받아야하며**, 사전에 공단으로 검사계획서를 제출(지침 [별지 제1호 서식])
 - 검사 의뢰 전 **검사대상기기 및 검사기관 여부** 등을 공단에 **사전확인** 권장
 - **2022년 12월 31일** 이내에 공단에게 검사면제 확인을 받고 수입되는 기기에 한함
 - 검사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검사 면제신청 요망
 - 해당 고시 유효기간 만료 전 **외국의 검사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제작 중인 검사대상기기**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이 고시에 따른 검사 면제 신청 가능
 - 검사면제를 신청코자 하는 업체는 **최초 신청에 앞서 사업장(제조공장 소재지) 단위로 제조업체 등록 필수**
 - (등록방법) 해외 제조검사 신청 홈페이지(<http://ssin.energy.or.kr:10080>)에서 회원가입* 신청
 - (구비서류**) ① 제조국에서 발행하는 제조업 허가증 또는 이에 갈음될 수 있는 서류, ② 제조국에서 발행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갈음될 수 있는 서류
 - * 업체등록 정보 작성 시 모든 항목은 **영문으로 기재**
 - **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
- 수입기기 검사면제 신청 시 모든 구비서류는 **국문 혹은 영문으로 제출** 요망

※ 검사증 예시

			
ASME	PED	일본(노동안전위생법)	중국(TSG)

② 지침에 따라 국내로 수입하여 구조검사 받는 경우(기존 현장용접검사 완료 기기)

절 차	주 체	방 법
검사계획서 제출	신 청 인 ¹⁾ → 공단 본사	지침 [별지 제1호 서식] (yeji92@energy.or.kr)
▼		
국내로 수입	신 청 인	수입신고필, 구조검사 장소
▼		
구조검사 신청 ²⁾	제조업자 → 공단 지역본부	에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 서식]
▼		
구조검사	공단 지역본부	기존 검사기준
▼		
구조검사증 발행	공단 지역본부 → 신 청 인	우편 또는 방문수령
▼		
설치검사 신청	설 치 자 → 공단 지역본부	에법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 서식]

1) 수입대행업자, 설치자, 제조업자 등 수입하려는자

2) 구조검사 신청 전 일정협의 등을 위해 공단 본사에 사전 통보 요망

(지역전략실해외검사표준화팀|김예지 대리 E-mail. yeji92@energy.or.kr Tel. 052-920-0548)